

2025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신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의 일부 보조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2025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 점포란?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 및 장소

○ 지원기간: 임차료 지원 월로부터 12개월 도래 월까지

○ 지원규모: 40개팀

○ 지원내용

- 월별 임차료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 지원(12개월)

-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19~39세 청년창업자 ※ 공고일 기준(1984. 11. 23. ~ 2005. 11. 22.)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자

-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선정일 기준 3달 후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3달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

(2024. 8. 21.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울산 남구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영위가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유흥접객업, 사행사업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샵인샵 형태의 창업은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기창업자로 추가 창업을 하려는 자 (추가 점포 개설 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 공고일 이후 휴·폐업 후 창업을 하려는 자 ○ 공고일 기준 재직 청년(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단, 접수기간 마감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유관기으로부터 임차료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있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가족 간(직계존비속, 배우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법인기업 제외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기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외업종: <붙임1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II. 접수 및 선정방법

- 접수기간: 2024. 11. 25.(월) ~ 12.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일자리종합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69번길 44 일자리종합센터 3층 창업지원센터(달동, 한전맞은편)
 - (이 메 일) iljali2024@korea.kr ※ 이메일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52-226-3184)로 반드시 확인
 - (문의전화) 052-226-3184, 3273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구분	일정	심사내용
1차 서류심사	'24.12.23.~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및 자격 적격여부 심사 - 신청인 자격요건,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서류합격 통보: 12.30.한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	'25.1.6~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사업성, 창업 적적성 등 ○ 기타 심사위원단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감점: -5점(프랜차이즈) ※ PPT 또는 한글파일 제출(5분 이내)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5.1.3.까지 메일 제출

※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심사표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으로 고득점순 선정
※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70점 미만 미선정
- 결과발표: 2025. 1. 13.(월) 개별통보

III.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서류 (공 통)	1.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4. 참여 서약서 1부	서식4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본인기준 1, 父기준 1, 母기준 1, 총3부) ※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기준 1부 추가 제출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초기창업자> ※ 증명서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홈택스
	8.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초기창업자>	
	9.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10.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1.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2부 (반드시 2과목 이상 수료)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서류심사 통과 시	12. 발표자료(5분 내외 분량) / PPT 또는 한글파일	서류심사 합격자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IV. 유의사항

-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전부 신청 마감 기간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
-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차 면접심사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 확정 후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창업을 완료(사업자등록증 취득)하고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 ※ 샵인샵 형태의 창업은 불가하며 정해진 기간 내 창업 및 자료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약정기간 내 중도포기 시
 - 사업장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V. 문 의

- 남구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종합센터(☎226-3184, 226-327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중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중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종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급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